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	총무과	1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3

(2012. 10. 18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9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2-81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동 조례안은 조례제정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.

< 검토의견 >

동 조례안은 조례제정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·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